

악보자료 목록의 기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scription of Printed Music Cataloging

한 경 신(Kyung-Shin Hahn)**

< 목 차 >

I. 서론	2. 표제와 자료유형표시
II. 악보자료	3. 악보의 종류에 관한 사항
1. 악보자료 및 악보자료목록의 특성	4. 발행사항
2. 악보자료의 종류	5. 형태사항
3. 악보자료에 관한 목록규칙	6. 주기사항
III. 악보자료 목록의 기술	7. 기타
1. 기술의 정보원	IV. 요약 및 결론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악보자료의 목록을 위해 사용되는 목록규칙의 분석을 통해 악보자료의 목록규칙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우리의 악보자료에 대한 목록과 목록규칙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악보자료의 특성과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의 악보자료에 관련된 목록규칙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현재 악보자료 목록규칙의 근간을 이루는 ISBD(PM)을 비롯하여, 주요 목록규칙으로 사용되는 AACR2R 2002 Revision 2004 Update 제5장 Music과 KCR4 제5장 악보, 그리고 KORMARC(통합서지용)과 MARC21(Bibliographic Data)의 악보부분을 대상으로, 악보자료 목록시 다른 자료들과 구별되는 기술영역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들 영역은 기술의 정보원, 표제와 자료유형표시, 악보의 종류에 관한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등에서의 특징과 제문제 등이다.

주제어: 악보, 악보자료, 악보자료목록, 음악자료목록, 목록규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stinctiveness and problem areas in cataloging rules of printed music. In this study, therefore, the characteristics, kinds, and cataloging rules related to a printed music are examined first as the backgrounds. Then the sources of information, title and general material designation, musical representation statement, publication · distribution · etc., physical description, notes, etc. in ISBD(PM), Chapter 5 Music of AACR2R 2002 Revision 2004 Update, and Chapter 5 Music of KCR4 are analyzed. And also printed music parts in Bibliographic Data of KORMARC and MARC21 are analyzed. Finally, the special issues and some problems to be considered in cataloging of printed music in KCR4 are presented.

Key Words: Printed Music, Scores, Cataloging Rules, Cataloging Rules of Printed Music, Cataloging of Music

* 본 논문은 2006학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hks0330@mail.hannam.ac.kr)

• 접수일: 2007년 2월 23일 • 최초심사일: 2007년 3월 5일 • 최종심사일: 2007년 3월 22일

I. 서론

음악은 음(音)을 재료로 하여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예술이자 청각예술로, 이론에 실천이 동반되는 학문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음악자료는 읽을 수 있는 자료와 들을 수 있는 자료, 즉 인쇄에 의한 기록물과 음에 의한 기록물로 구성된다. 그 중 인쇄에 의한 기록물로는 음악문헌과 악보를, 음에 의한 기록물은 음반·테이프 등의 녹음자료와 비디오·DVD 등의 영상자료를 들 수 있다. 이 중 특히 악보는 음악을 기록하기 위해서 음악 특유의 기호를 통해 공간적이고 시각적인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즉, 악보는 청각적이고 순간적인 음을 가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모든 음악활동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악보는 음악의 연주·감상의 근거로써 또한 기억·보존·학습 등의 목적으로 모든 음악활동의 근거가 되는 1차 자료로써 음악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오늘날 음악은 사회적·문화적인 일상생활로부터 공연예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생활에 깊이 관여되어 있으며, 음악인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악보를 비롯한 음악문헌·음반·테이프 등의 음악자료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내의 음악자료는 예술 관계 자료 가운데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¹⁾ 특히 전 세계 악보의 생산량은 모든 주제 분야에서 출판되는 도서의 총 수와 비교할만한 방대한 양이 발행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들에서는 이들의 서지통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전 세계의 도서관·박물관·아카이브즈 등에 산재해 있는 악보자료의 서지통정을 위한 국제협력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음악자료 중 특히 악보는 서지통정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의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대상 자료에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립음악도서관이나 음악도서관협회 등과 같은 음악자료의 서지통정을 국가적 차원에서 주관할 기관이나 기구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악보는 특성상 자료규명과 서지사항의 규명이 어렵고,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며, 판이 가지각색이고 가격이 높은 등 도서관자료로서의 조직 및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음악도서관들에서 조차 완전한 서지 및 목록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음악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이용자의 악보에 대한 요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악보자료의 폭넓은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는 음악과 예술·문화 육성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음악활동의 성장속도에 비해 그 기초가 되는 악보자료에 대한 관심과 관리 및 활용도가 대단히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악보자료의 소장처 규명은 물론 체계적인 수집·정리·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목록의 경우, ISBD(PM)의 국제적인 표준화 기술을 비롯하

1) 이민정, 악보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0), p.42.

여 우리의 KCR4 제5장 악보와 AACR2R 2002 Revision 2004 Update(이하 AACR2R이라 함) 제5장 Music에서 악보의 목록을 위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또한 KORMARC(통합서지용)(이하 KORMARC이라 함)과 MARC 21에서도 악보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들의 목록내용을 살펴보면 이들 규칙들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도서관목록마다 다르게 기술되므로써 이용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또한 악보에 대한 목록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도서관들도 상당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든 음악활동의 기초가 되는 1차자료로서 악보자료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도서관자료로써 악보자료 및 악보자료목록의 특성과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악보자료의 검색도구로서의 목록규칙이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가를 살펴본 후, 악보의 목록규칙 적용을 위한 악보관련 목록규칙, 즉 ISBD(PM), KCR4 제5장 악보, AACR2R 제5장 Music을 대상으로 악보자료 목록시 다른 자료들과 구별되는 기술사항들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각 기술사항에 따른 KORMARC과 MARC 21에서의 데이터요소들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악보자료의 목록상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우리의 악보자료 목록상의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악보자료

1. 악보자료 및 악보자료목록의 특성

樂譜(score and parts)는 청각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음악을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해 기보법(記譜法)에 의하여 가시적으로 지면상에 표시한 필사본이나 인쇄본으로, 오늘날은 주로 인쇄형태로 출판된다. 따라서 악보자료는 음악의 연주·감상의 근거로써 또한 기억·보존·학습 등의 목적으로 모든 음악활동의 기초가 되며 작곡가와 연주자의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는 음악분야의 주요 1차 자료이다.

음을 가시적으로 표시하는 기보법은 각 나라와 그들의 민족음악이 지닌 체계와 유형에 따라 고대부터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고대의 기보법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중세중기 이후에 기보법이 발전하면서 1450년 활자인쇄술의 발명을 통한 인쇄악보는 음악의 전파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이후 기보법은 많은 다양한 변천을 거치면서 17세기 이후에는 오늘날 서양음악의 오선기보법이 완성되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현대음악에서는 전자악보와 시각장애자를 위한 점자악보를 비롯 전위음악(Avant-garde music)악보, 도표나 그래프를 이용한 악보, 색깔을 사용한 악보 등이 사용되기도 하나, 이들은 공인된 기보법이 아닌 독특하게 고안된 경우의

악보이다.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경우, 현재 전해지고 있는 국악악보의 기보법은 율자보(律字譜), 정간보(井間譜), 공척보(工尺譜), 약자보(略字譜), 육보(肉譜), 합자보(合字譜), 오음약보(五音略譜), 연음표(連音標)의 8가지가 있다.²⁾ 이 중 육자보와 정간보는 지금도 전통음악에 쓰이고 있는 악보이다.

도서관에서 악보자료를 그 장서의 일부로 소장하고 봉사한 것은 19세기 이후 악보 생산량의 급격한 증가에 의해서이다. 그 이전에는 악보 판매업자나 악보출판사들에 의한 유료대출도서관(rental libraries)이 악보의 보급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다. 악보자료의 봉사는 모든 유형의 도서관에서 장서의 일부로 다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음악도서관에서는 핵심자료로서 봉사된다. 따라서 악보자료를 취급하는 일반사서나 음악전문사서는 악보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다른 도서관자료와 구별되는 악보자료의 특성은 첫째, 이용자는 음악학자, 음악방송국 및 음악자료생산업체, 인류학·사회학자, 음악이론가, 음악평론가, 교향악단원, 합창단원, 전문연주가, 지휘자, 음향엔지니어, 녹음기술자, 음악대학교수진, 음악전공학생, 어린이 등으로 다양하다.³⁾ 이 중 주요 이용자는 연주자, 지휘자 및 음악전공자들이다. 둘째, 악보자료를 이용하는 목적은 주로 리허설, 녹음, 음악회용, 교육 및 연구 등이다. 셋째, 악보자료는 쉽게 최신성을 잃지 않는 영구적인 정보로 모든 음악활동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폐기율이 극히 적다. 넷째, 악보자료는 일반도서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소수의 음악전문출판사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생산된다.⁴⁾ 다섯째, 대부분의 악보는 충분한 수요를 보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량으로 생산하여 쉽게 절판되고 대여하게 된다.⁵⁾ 여섯째, 특히 대부분의 고전음악 악보자료는 그 초판이 이미 절판되어서 리프린트 악보 발행이 활발하다. 일곱째, 악보자료는 하나의 음악작품에 대해 다수의 판으로 출판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 작곡가의 필사본이 팩시밀리로, 전집내의 일부로, 별도로 출판된 총보·파트보·미니어처스코어 및 피아노 편곡으로 또는 많은 작곡가들의 합집 내의 한 부분으로도 발견될 수 있다.⁶⁾ 따라서 악보자료의 선정·분류·배열·목록 상의 어려움이 따른다. 여덟째, 악보자료는 총보, 낱장악보, 파트보, 표지, 크기 등 체제상 다양한 형태로 출판된다. 특히 앙상블이나 관현악, 합창곡 등의 악보와 같이 여러 악기 혹은 성부가 출현하는 곡은 일반적으로 총보와 파트보가 함께 수록되어 출판된다. 따라서 제본의 필요성 및 보관상의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아홉째, 오늘날 세계적으로 악보의 출판량은 막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보자료는 도서관의 다른 자료와 달리 서지통정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한 실정이다.

2)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통합서지용(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6), p.253.

3) 이지원, 음악주제전문사서의 교육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6), p.28.

4) 이민정, *op. cit.*, p.43.

5) *Ibid.*, p.14.

6) *Ibid.*, p.20.

악보자료의 목록은 이상의 악보자료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술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의 목록규칙과 MARC에서는 음악자료 중 악보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세한 목록정보에 의한 이용자의 악보자료에의 원활한 접근 및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악보자료 목록상 다른 도서관자료와 구별되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악보자료는 다양한 체제와 형태로 발행되므로 명확한 분류나 서가배열이 어렵다. 따라서 이용자와 자료를 연결시키는 목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목록자의 음악에 관한 주제지식이 많이 요구된다. 둘째, 악보자료는 공식적인 표제면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목록의 근거가 되는 주정보원을 찾기가 어렵고 정보의 우선순위 결정도 복잡하다. 따라서 표제를 선정하기가 어렵다. 셋째, 악보자료는 표제가 발행기관 또는 국가에 따라 여러 개의 언어로 표현되거나 상이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표제에는 연주수단·조·작품번호 등 숫자와 기호가 포함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서지기술사항이 복잡하고 보다 많은 접근점을 필요로 한다. 넷째, 악보자료는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등 저작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많고 다양하다. 그리고 저자명에 해당되는 사항이 표제, 즉 곡명의 일부가 되는 경우도 많다.⁷⁾ 다섯째, 악보자료는 별도의 단일악보 외에도 선집이나 전집 형식으로 하나의 자료 안에 여러 작품이 포함되어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발췌곡의 경우 보다 규모가 큰 작품 가운데 일부가 별도로 출판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악보자료 수집시 장서의 중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목록을 통한 검색이 어려워지므로 이들을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여섯째, 악보자료의 검색에 있어서 대체로 고전음악의 경우는 작곡가에 의한 접근이, 성악 및 합창곡에서는 표제에 의한 접근이 용이하다. 특히 악기편성이 복잡한 실내악과 관현악의 경우는 음악지식에 근거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일곱째, 악보자료는 서로 다른 연주자에 의해 다양한 매체, 즉 음반·테이프·비디오자료 등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목록기술시 이들 자료와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악보자료는 자료가 표현할 수 있는 서지정보의 수준이 다른 도서관자료들과 다르며 접근요소 또한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악보자료의 종류

음악은 음이라는 한 단위에서 시작하여 작곡·연주·감상의 단계를 거쳐 성립된다. 먼저 작곡자에 의해 작곡자가 지닌 특유의 음악성과 예술성에 따라 창작예술 작업의 결과로 악보가 생겨난다. 그리고 그 악보는 연주자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되어 소리로 표현되며, 이것을 듣는 사람은 그 작품을 느끼고 감상할 수 있게 된다.⁸⁾ 따라서 작곡의 결과물인 악보와 악보의 연주한 내용을

7) 정유진, 음악자료의 목록정보 확장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3), p.13.

음향화된 녹음 및 비디오자료는 음악자료의 주요부분을 구성한다. 특히 악보는 음악분야에 있어서 모든 음악활동의 기초가 되는 음악자료의 1차 자료이다.

악보는 17세기 이후 오선기보법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면서 실재 연주에서부터 학습·감상·연구에 이르기까지 많은 다양한 요구가 있어 왔다. 그 후 19세기 공공교육의 이념에 따른 활발한 음악교육과 왕성한 음악활동의 결과로 다양한 유형의 악보들이 다량으로 생산되었다. 또한 과거의 많은 작품들이 새롭게 간행되면서 악보생산량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악보는 이용목적, 크기, 형태 및 版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출판된다. 악보자료의 유형은 대체로 이용목적에 따라 연주용악보와 학습용악보로 구분되는데,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연주용악보

연주용악보는 말 그대로 연주자의 연주나 리허설을 위해 발행된 악보를 말한다. 연주용악보는 오케스트라나 앙상블에서 악기 혹은 성부 전부를 한 묶음으로 표시해 작품의 전체 세부사항을 한 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한 총보(full scores)와 그 음악작품에 참여하는 각 악기 및 성부별 악보인 파트보(parts)로 구분된다. 영어에서 말하는 스코어(scores), 즉 악보는 일반적으로 총보를 의미한다. 또한 연주용악보는 관현악용, 합주/합창용, 중주/중창용, 독주/독창용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1) 총보(full scores)

총보는 기악곡이 성행했던 1600년경부터 발전하여 왔으며, 그 크기와 이용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피아노스코어(piano score)와 보컬스코어(vocal score)가 있다. 피아노스코어는 주로 오페라나 오라토리오, 관현악 등을 피아노용으로 편곡한 악보를 말한다.⁹⁾ 그리고 보컬스코어는 오페라·합창곡 등 성악이 포함된 규모가 큰 음악에서 음악의 기악부는 피아노용으로 편곡하고 성악부만을 본래대로 각 성부를 구분하여 만든 악보를 말한다. 이 보컬스코어는 건반 악기를 위해 편곡된 반주를 갖는 합창부분만을 나타낸 보컬스코어인 합창용악보(chorus score)와 함께 오페라 연습에 필수불가결한 악보이다.

또한 앙상블(관현악, 협주곡, 실내악, 대합창곡)에서 전체의 개략을 파악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표에 작곡의 주요 특징을 지닌 작곡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스케치로서 short score가 있다. short score에는 condensed scores와 close scores가 있다. 이 중 condensed scores는 최소한의 보표에 지휘자가 한 눈에 그 전체개략을 볼 수 있도록 편성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악기부문에 대한 악보이다. 반면에 close scores는 condensed scores와 같은 목적의 악보이나 주로 성악용으로, 찬송가나 성가처럼 최소한의 보표 위에 모든 파트들을 제공하는 악보이다.¹⁰⁾

8) *Ibid.*, p.9.

9)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편, 한국목록규칙, 제4판(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3), p.475.

이 외에도 둘 이상의 기악파트를 병렬시켜 합주시 파트간의 시간적관계가 일목요연하게 되도록 기재된 악보인 합주보(合奏譜),¹¹⁾ 지휘자와 연주자로 하여금 그들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앙상블의 다른 악기들에 대해 연주지시악절이 더해진 연주파트로 instrumental/conductor/score/part가 있다.

(2) 파트보(parts)

파트보는 오케스트라나 앙상블, 합창곡 등에서 하나의 악기나 성부에 대해 보기 쉽게 그들 각 연주자들을 위해 인쇄된 악보를 말한다. 특히 앙상블이나 관현악 악보와 같이 여러 악기나 성부가 함께 하는 곡은 대체로 총보와 각 악기나 성부의 파트보가 함께 수록되어 출판된다. 따라서 도서관에서는 이들의 관리와 목록상의 주의를 요한다.

나. 학습용악보

학습용악보는 교육이나 감상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편집된 악보를 말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미니어처스코어(miniature score)가 있는데, 이것은 연주용이 아닌 학습용이나 감상용으로 총보의 크기를 축소한 것으로서 대개 5×7인치 정도의 인쇄악보를 말하며, 포켓스코어(pocket score) 또는 스터디스코어(study score)라고도 불리운다.¹²⁾ 또한 학습용악보에는 작곡가별·시대별 등으로 편집한 전집 및 선집이 있는가 하면, 소품 1곡을 인쇄한 피스(piece)나 낱장악보가 있다.

또한 악보는 이용목적에 따른 연주용악보와 학습용악보 외에 크기나 형태에 따라 일반악보, 소형악보, 대형악보, 특대악보, 두루마리악보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에 힘입어 마이크로형태악보, 점자악보, 팩시밀리악보, 전자악보, 전위음악악보, 도표·그래프·색깔 등을 사용한 악보 등 다양한 악보가 사용되기도 한다.

3. 악보자료에 관한 목록규칙

초기의 도서관 목록규칙은 주로 도서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20세기 이후 시각과 청각자료의 발달과 더불어 도서관계는 비도서자료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악보자료는 일찍이 도서관자료의 일부로 소장되어 왔으나, 악보자료의 목록규칙은 비도서자료나 음악자료 목록규칙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져 왔다.

악보자료에 관한 목록규칙의 기원은 1904년 Charles Ammi Cutter의 *Rules for a Dictionary*

10)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2nd ed., 2002 Revision 2004 Update(Chicago : ALA, 2004), p.D-2.

11)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편, *op. cit.*, p.475.

12) 이민정, *op. cit.*, p.7.

Catalog 제4판을 위해 준비되었던 Oscar Sonneck에 의한 부록에서 찾을 수 있다.¹³⁾ 이것은 당시 LC의 Music Division에서 도서목록의 편집에 중사하던 Sonneck이 음악학자들에게 그 Division의 소장자료를 알리기 위해 계획되고 Cutter의 목록규칙과 관련하여 사용되기 위한 것으로, 음악에 관한 예외의 것만을 3페이지에 설명한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악보를 비롯한 음악자료 목록의 문제들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적인 목록환경에서 엄격한 의미의 악보를 비롯한 음악자료의 목록규칙은 1940년대까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전의 도서관 목록규칙이나 잡지의 논의를 통해 이들에 관한 내용이 간략하게 언급되는 경우가 있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1908년의 *Anglo-American Code*를 비롯하여, 1915년에는 *Library Journal*의 이슈로 논의되었고, 1920년에는 *ALA Bulletin*에 이들 규칙의 초안형태가 수록되기도 하였다. 이 중 1920년의 것은 *Anglo-American Code*의 update에 포함되기 위한 것으로, 상당히 확장된 악보자료에 관한 규칙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후 음악장서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1930년대에는 악보 및 음악자료의 목록에 관한 논의가 논문 또는 단행본 형태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¹⁴⁾

1941년과 1942년에 미국음악도서관협회(Music Library Association)는 음악자료 중 악보자료를 위한 *Code for Cataloging Music*과 녹음자료를 위한 *Code for Cataloging Phonograph Records*의 등사판 초안을 발행하였다. 이들은 음악자료 목록의 표준화를 위한 약 10년간의 노력의 결과로, 일반 목록규칙과 함께 사용되도록 의도된 상세한 음악자료 목록규칙이었다. 이 중 악보자료에 관한 예비목록코드로서의 *Code for Cataloging Music*은 제2장 Title과 제3장 Imprint는 1941년에, 제4장 Collation과 제5장 Notes는 1942년에, 그리고 제1장은 ALA의 초안코드인 *Music: Entry and Heading*의 부분으로 발행되었다. 이들은 별도의 한권으로 발행되지 않고, 기입과 표목에 관한 것은 1949년 *ALA Cataloging Rules for Author and Title Entries*에, 악보와 녹음자료의 기술에 관한 규칙은 LC의 *Rules for Descriptive Cataloging in the Library of Congress*의 제9장 악보에 합병되었다. 따라서 이들 규칙들은 많은 미국도서관들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었다.

그 후 악보를 비롯한 음악자료만을 위한 별도의 목록규칙을 갖기 위한 노력의 결과, 1958년 MLA와 ALA 공동의 악보와 녹음자료를 위한 목록규칙, 즉 *Code for Cataloging Music and*

13) Richard P. Smiraglia, *Music Cataloging: The Bibliographic Control of Printed and Recorded Music in Libraries* (Englewood, Colorado : Libraries Unlimited, Inc., 1989), p.13.

14) Kay Schmidt-Phiseldeck, *Musikkatalogisierung: ein Beitrag zur Lösung ihrer Probleme*, Leipzig, Germany : Breitkopf & Hartel, 1926. E. Weiss-Reychser, *Anweisung zur Titelaufnahme von Musikalien*, Leipzig, Germany : Einkaufshaus für Bucherein, 1938. ①yvind Anker, "Katalogisering av Musikalier," *Bok og Bibliotek*, Vol.6(1939), pp.37-43. Lionel R. McColvin and Harold Reeves ed. "Chapter Two: Cataloguing," in *Music Libraries*, Vol.1. London: Grafton, 1937. John F. Russell, "The Cataloguing of Music," *Library Association Record*, Vol.40(1938), pp.247-250 등.

*Phonorecords*를 발행하였다.¹⁵⁾ 이것은 이전의 목록규칙을 사용해 온 많은 음악사서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1949년 규칙들의 음악부분에 통일서명에 관한 LC규칙과 간소화한 간략목록(simplified cataloging)에 관한 규칙을 통합한 것이었다. 이것은 거의 그대로 1967년의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에 통합되었다. AACR은 1961년의 국제목록원칙회의(ICCP)의 「파리원칙」에 따라 이전까지 목록규칙의 일부분 혹은 별책으로 취급되던 비도서자료를 큰 비중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악보 및 음악자료를 비롯한 비도서자료의 목록규칙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AACR의 제Ⅲ부 비도서자료는 필사본·지도 및 지도책·영화와 필름스트립·악보·음반·그림·디자인 및 평면자료를 취급하고 있으며, 전체 300항목 중 70항목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악보자료는 제5장 Music에서 취급하고 있다.

한편, 1951년 국제음악도서관협회(IAM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usic Libraries, Archives, and Documentation Centres)는 음악자료의 목록을 위해 국제적인 코드를 생산하기 위한 30년 예정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Kay Schmidt-Rhiseldeck를 의장으로 한 IAML의 International Cataloging Code Commission은 5권의 다수언어로 된 *Code International de Catalogage de la Musique*를 발행하였다.¹⁶⁾ 이들은 음악장서의 목록을 위한 기본원칙들에 관한 상세한 배경을 제공한 것으로, *IAML Code*로 불리우며, 이후의 ISBD(PM)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70년대에 들어와 IFLA의 목록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이를 이용한 목록의 자동화 및 국제적인 정보유통을 위한 표준화를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서지작성 및 검색을 전제로 1974년 ISBD(M)을 간행하였다. 이후 1975년 IAML의 Cataloging Commission은 악보에 관한 ISBD를 위해 IFLA 목록위원회와의 Joint Working Group의 설립을 제안하여 1976년 8월 그 그룹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2년간의 집중적인 노력의 결과 그 초안이 만들어지고, 1980년 5월에는 ISBD(PM)을 발행하게 되었다.¹⁷⁾ 따라서 국제적인 면에서 악보자료의 서지통정 및 국제적인 교환을 위한 목록의 표준화를 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IAML Cataloging Commission 내의 Joint Working Group은 ISBD(PM)의 적용을 관찰, 많은 논의와 평가 후 1991년 개정판을 발행하게 되었다.

1978년의 AACR2는 서지기술에 대한 ICCP원칙과 ISBD 구조를 통합시켜 발행하였다. 당시 악보자료에 대한 ISBD(PM)은 발행전의 초안형태로 존재하였으므로 AACR2의 악보부분에 이를

15) Joint Committee on Music Cataloging. *Code for Cataloging Music and Phonorecords* (Chicago : ALA, 1958).

16) 제1권, *Der Autoren-Katalog der Musikdrücke*(1957년); 제2권, *Code restraint* 혹은 *Simplified rules*(1961년); 제3권, *Rules for Full Cataloging*(1971); 제4권, *Rules for Cataloging Music Manuscripts*(1975년); 제5권, *Le Catalogage des Enregistrements Sonores*(1983년)

17) IFLA. *ISBD(PM):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Printed Music* (München : Saur, 1980).

반영할 수 있었다. AACR2는 총 2부 26장으로 구성되며, 제1부에서는 기술을 제2부에서는 표목을 다루고 있다. 이 중 악보자료에 대하여는 제5장 Music에서 이에 대한 규칙과 예를 제시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제1장의 기본규칙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1988년에 개정된 AACR2R은 AACR2의 잘못된 부분이나 누락을 바로 잡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새로운 예를 추가한 정도이다. 제5장 Music 악보자료에 대하여는 거의 그대로이나, 특히 음악작품을 위한 통일서명에 관한 규칙(25.25-25.35)에서는 광범위한 재조정이 이루어졌다. 이후의 AACR2R 2002 Revision 역시 제5장 Music에 대하여는 큰 변동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주관하에 KORMARC의 개발을 위한 일환으로 관련된 목록규칙이 요구됨에 따라 한국정보관리학회에 이에 대한 연구를 위촉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최초의 비도서자료를 위한 목록규칙으로 1996년 「한국문헌자동화목록규칙: 비도서자료용」을 발행하게 되었다. 본 규칙은 ISBD(NBM)을 기초로 한 것으로, 비도서자료를 녹음자료, 시청각자료, 지도자료, 컴퓨터자료로 구분하여 모든 비도서자료를 통합적으로 다루었다. 이 중 악보자료에 대하여는 필사된 악보·인쇄된 악보 및 녹음자료(음악 또는 음악이외)를 취급한 녹음자료(MU)를 적용토록 하였다. 이 후 2003년 발행된 「한국목록규칙」 제4판(KCR4)은 지금까지의 단행본 중심의 목록규칙에서 벗어나 다양한 매체로 발표되는 여러 유형의 자료를 수용하여 기술의 대상을 크게 확장시켰다. KCR4는 단행본을 포함한 11개의 자료유형에 대한 기술규칙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 중 제5장이 악보로 제1장 기술총칙을 참고하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KCR4는 2006년의 KORMARC의 기술규칙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Ⅲ. 악보자료 목록의 기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악보자료의 목록규칙으로 사용되고 있는 KCR4 제5장 악보와 AACR2R 제5장 Music은 ISBD(PM)을 기초로 악보자료의 특성과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악보자료의 기술대상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ISBD(PM)은 현대의 인쇄악보를 대상으로 하며, 오래된 고악보에 대하여는 ISBD(PM)과 ISBD(A) 규정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0.1.1). 그리고 KCR4는 인쇄나 필사된 악보 모두를(5.0.2), AACR2R은 발행된 악보만을(5.0A1) 기술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들 규칙들은 내용면에서도 차이점을 갖고 있다. ISBD(PM)과 KCR4는 목록의 기술부분만을 다루고 있으며, AACR2R은 목록의 기술과 표목, 통일표제 모두를 다루고 있다.

다음은 이상의 목록규칙들을 대상으로 악보자료 목록시 다른 자료들과 구별되는 기술영역, 즉 기술의 정보원·표제와 자료유형표시·악보의 종류에 관한 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주기사항

등에 관하여 이들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에 각 사항에 따른 KORMARC 과 MARC21의 특징적인 관계도 살펴보고자 한다. 각 기술영역의 명칭은 KCR4의 것을 적용한다.

1. 기술의 정보원

악보자료의 목록기술을 위한 주정보원의 선정은 악보목록자에게 어려운 문제이다. 이것은 주로 도서출판의 전통과는 다른 악보출판상의 문제와 상업적인 전통에 기인한다. 따라서 악보자료 정보원의 선정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도서의 표제지와 같은 표제지를 가진 악보자료는 표제지가 주 정보원이 된다. 둘째, 악보자료는 도서와 같은 표제지를 갖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공식적인 표제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가장 충분한 정보를 갖는 정보원으로 대체표제지를 찾아 사용한다. 셋째, 악보자료는 오래전부터 적절한 표제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단순히 장식적인 표제지를 갖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단순히 악보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적인 전통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그대로 장식적인 표제지가 반드시 표지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넷째, 악보자료는 또한 표제지의 한 유형인 '리스트(list)' 표제지가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본 악보의 작품과 함께 해당출판사에서 발행한 해당 작곡가의 작품리스트나 해당출판사의 관련된 작품의 리스트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리스트표제면에 기록된 본 악보자료 이외의 다른 표제들은 목록기술에서 생략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¹⁸⁾ 또한 다른 정보원에 본 리스트표제면보다 더 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이 리스트표제지는 정보원의 선정에서 무시될 수 있다.¹⁹⁾ 다섯째, 총보와 파트보가 세트로 함께 발행되는 경우, 이들 악보는 각각 다른 표지나 표제지를 갖는다. 이 경우에는 그 각각에 나타나는 표제 및 책임사항 데이터가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여섯째, 악보자료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표제관련 정보는 첫 보표의 위어나 권두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발행관련사항은 주로 악보의 첫 페이지 밑부분에 나타난다. 특히 판권표시와 일자는 법에 의해 이 위치에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²⁰⁾ 일곱째, 악보의 첫 페이지 맨 위에 나타나는 표제데이터인 권두표제는 흔히 표제 및 책임사항에 대한 유일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²¹⁾ 따라서 권두표제는 대체표제지로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ISBD(PM)에서 악보자료의 기술을 위한 주정보원은 표제면이다. 그리고 표제면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표제면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표지·악보의 제1면·판권기 등이 될 수 있다.

18) Robert L. Maxwell. *Maxwell's Handbook for AACR2: Explaining and Illustrating the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through the 2003 update*. 4th ed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4) p.157.

19) Richard P. Smiraglia. *op. cit.*, p.20.

20) *Ibid.*, p.19.

21) Richard P. Smiraglia. *Describing Music Materials: A Manual for Descriptive Cataloging of Printed and Recorded Music, Music Videos and Archival Music Collections, For Use with AACR2 and APPM*. 3rd ed (Lake Crystal, Minn. : Soldier, 1997), p.1.

특히 비로마자의 동양악보자료 중에는 판권기에 보다 완전한 서지정보가 주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에 대체표제면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판권기가 된다. 또한 각 기술사항별 정보원 중 규정된 정보원 이외의 정보원으로부터 기술한 정보는 각괄호로 묶어 기술하거나 주기사항에 각괄호 없이 기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0.5.2).

KCR4에서의 주정보원은 표제면, 판권기·표지·이표제면·악보의 제1면, 기타 머리지면이나 용기, 악보 이외의 정보원 순으로 선택하되, 원칙적으로 기술대상 악보에 나타난 정보 그대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ISBD(PM)과 거의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KCR4는 다른 규칙과 달리 필사된 악보도 기술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선장본(線裝本)으로 제작된 국악보에 대하여 기술사항별 정보원 중 특히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및 악곡형식에서 정보원을 규정하고 있다(5.0.3.2). 그 중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의 정보원은 권두(卷頭), 권수제(卷首題), 자서(自序), 권말(卷末), 제첨(題籤), 판심(版心) 순으로, 악곡형식의 정보원은 간기(刊記), 판권기, 서(序), 발(跋)로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기술사항의 정보원은 인쇄된 악보와 동일하다.

AACR2R에서는 악보자료에 단행본과 같은 전형적인 표제면이 있는 경우는 그 표제면을 주정보원으로 하되, 표제면은 없으나 리스트표제면이 있으면 리스트표제면·표지·권두 중 가장 충분한 정보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정보원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리스트표제면도 없는 경우에는 규칙 2.0B1에 따라 대체표제면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때에는 표지·부표제지·권두·판권기·난의표제 중 가장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정보원의 선정에 대하여 주기에 설명해야 한다.²²⁾ 또한 정보원을 주정보원이나 규정된 정보원에서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권두·표지·판권기·다른 권두지면 및 기타 정보원들로부터 정보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각 규칙별 악보자료에 관한 정보원은 대체로 동일하되, KCR4와 AACR2R이 ISBD(PM)을 기초로 좀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KCR4는 필사된 악보도 기술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원을 규정하고 있다. KCR4에서 세번째 정보원 중 용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악보자료에서의 용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그리고 AACR2R만이 악보출판상의 전통에 따른 리스트표제면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표제와 자료유형표시

자료유형표시는 목록기술대상이 되는 자료의 물리적인 형태를 식별하는 것으로, 기술의 앞부분에 그 자료의 범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ISBD(PM) 1.2.1). 이것은 ISBD(G)와 AACR2 이전에는 규정된 바 없는 기술사항으로서 비도서자료에만 적용되며, 악보자료 역시 적용되는 사항이다.

22) Ibid., p.2.

자료유형표시는 자료의 총체적인 자료유형 표시로서 ISBD(PM)과 AACR2R에서는 일반자료표시(General Material Designation)로 KCR4에서는 자료유형표시로 명명하며,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에서 본서명 바로 다음에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이용자에게 기술되는 자료의 형태를 빠르게 알려줌으로써 동일자료의 다양한 물리적인 형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료유형의 특성에 따른 이용기기를 미리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유형표시에 대하여 ISBD(PM)과 AACR2R은 선택사항인 반면, KCR4는 선택사항이 아닌 기술사항이다.

ISBD(PM)에서 자료유형표시는 선택사항으로 크게 인쇄형태의 악보자료와 양각형태의 악보자료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1.2.2). 이 중 인쇄악보자료에 대하여는 “printed music”이나 이에 상응하는 언어와 문자로, 양각형태의 악보자료는 “printed music, braille”이나 이에 상응하는 언어와 문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반이 딸린 악보자료와 같이 악보자료에 다른 자료유형의 것이 포함된 경우에는 주요한 자료유형표시만 기술하게 된다(1.2.3). 그리고 해당 악보자료에 본서명이 없이 둘 이상의 악보를 포함한 경우에는 첫 표제 다음에 자료유형표시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1.2.4).

KCR4에서는 자료유형표시로 “악보”나 “music”을 사용하며, ISBD(PM)과 같이 본표제 다음에 각괄호에 묶어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자료유형이 상이한 둘 이상의 구성요소로 된 경우에는 주된 구성요소의 자료유형만을 기술하도록 한다(5.1.2.2). 또한 점자악보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사항에 따라 제12장 점자자료의 규칙과 동시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AACR2R에서의 자료유형표시는 선택사항으로 “music”을 역시 본표제 다음에 각괄호에 묶어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악보자료가 다른 유형의 자료들과 한 세트를 이루면서 어느 자료유형도 주된 요소가 아닐 경우에는 자료유형표시로 “multimedia”나 “kit”를 사용하도록 한다(5.1C2). 점자악보자료에 대하여는 형태사항의 ‘특정자료종별과 자료의 수량’ 다음에 “braille”과 “press braille” 등을 괄호 안에 묶어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5.5B3).

이상의 각 규칙별 자료유형표시는 대체로 유사하되, 점자악보자료에 대하여는 달리하고 있다. ISBD(PM)은 기술대상이 점자악보임을 자료유형표시에 나타냄으로써 이용자는 표제와 동시에 점자악보임을 알 수 있게 된다. 반면에 KCR4는 해당사항에 따라 제12장 점자자료의 규칙을 동시에 적용하도록 하고, AACR2R은 형태사항에 이들을 기술함으로써 자료유형표시에서 벗어나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KORMARC과 MARC21에서 자료유형표시는 표시기호 245 표제와 책임표시사항(Title Statement)(이하 괄호안의 영문은 MARC21의 것임)의 \$h자료유형표시(medium)로 동일하게 사용된다. 그리고 자료유형표시와 관련된 것으로 리더의 일곱번째 자리인 ‘06 레코드유형’과 007 형태기술필드의 첫번째 자리인 ‘00 자료범주표시’를 들 수 있다. 이 중 리더의 06 레코드유형은 필사 이외의 악보(printed music)에 대하여는 ‘c’를, 필사악보에 대하여는 ‘d’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

다. 또한 007/00 자료범주표시에서 악보는 'q'를 사용한다. 이들 역시 KORMARC과 MARC21에서 동일하다.

3. 악보의 종류에 관한 사항

악보의 종류에 관한 사항은 서지기술사항 중 자료특성사항(Material Specific Details Area)의²³⁾ 하나로 악보자료에 대해 기술되는 사항이다. 이 사항은 기술대상 악보의 특수한 형식이나 물리적인 표현을 기술함으로써 각종 악보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악보자료의 물리적인 단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형태사항에 기술하게 된다. 악보자료에 있어서 악보의 종류는 대체로 악보의 표제면이나 표지에 나타나게 되는데, 기술시 특히 판차사항이나 책임사항에 포함된 악보의 종류를 본사항의 기술사항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²⁴⁾ 본 사항에 대하여 각 규칙은 사항의 명칭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KCR4는 악보의 종류에 관한 사항으로, ISBD(PM)은 악보특성사항(Printed Music Specific Area)으로, 그리고 AACR2R은 음악적표현표시사항(Musical Presentation Statement Area)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사항의 의미는 모두 동일하게 사용된다. 또한 본 기술사항에 대하여 ISBD(PM)과 KCR4는 기술사항인 반면, AACR2R은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ISBD(PM)에서 악보특성사항은 그 악보자료에 나타난 용어 그대로 기술한다. 그리고 만약 그 용어에 추가된 설명적인 句가 중요한 것으로 고려될 때는 악보특성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자세한 설명은 주기사항에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3.1.1). 다른 언어로 기술된 대등악보특성사항은 선택사항이다. 본 사항을 규정된 정보원 이외의 것에서 기술한 경우는 다른 사항의 경우에서와 같이 각괄호에 묶어 기술하게 된다(3.1.2). 또한 기술대상의 악보자료에 악보특성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표제면이나 서지기관의 언어와 문자로 적절한 악보특성표시를 각괄호에 묶어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3.1.3).

KCR4의 악보의 종류에 관한 사항에는 음악작품의 악보형식이나 판형(判型)의 표시, 예컨대 총보·파트보·총보와 파트보·미니어추어스코어 등을 기술하되, 음악자체에 어떤 변경을 가한 의미의 표시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5.3.1.1). 또한 으뜸정보원에 악보의 표현형식이 있는 경우는 ISBD(PM)과 같이 그대로 기술하고, 특히 표제와 책임사항 등 다른 기술사항에 악보의 종류가 포함된 경우에는 생략하게 된다(5.3.1.2). 2개 이상의 언어와 문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다른 사항의 경우와 같이 본표제와 일치하는 언어와 문자로, 일치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처음에 기술된 언어와 문자로 기술한다. 소정의 정보원 이외에서 악보의 종류를 채기한 경우는 ISBD(PM)과 같이

23) 자료특성사항은 자료유형 중 악보자료를 비롯 지도, 전자자료, 연속간행물에만 기술되는 사항이다.

24) Richard P. Smiraglia, *Describing Music Materials*, op. cit., p.8.

각괄호에 묶어 기술하되, 그 정보원을 주기사항에 기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ACR2R에서 음악적표현표시사항은 선택사항으로 주정보원에 나타난 음악의 물리적인 표현 형식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음악적표현표시사항이 2개 이상의 언어로 나타난 경우는 KCR4와 같다. 또한 책임사항과 연관되어 나타난 음악적표현표시사항 역시 KCR4와 같다(5.3B1). 그리고 만약 음악의 표현형식이 다른 사항에서 분리되기 어렵게 사용된 경우에는 본 사항에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5.3B2).

이상의 각 규칙별 악보의 종류에 관한 사항은 본 사항의 명칭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 내용면에서는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KORMARC과 MARC21에서 악보의 종류에 관한 사항은 표시기호 245 악보의 표현형식 (Musical Presentation Statement)의 \$a 악보의 표현형식으로 동일하게 사용되며 해당 시 필수 필드이다. 본 필드의 명칭은 AACR2R의 것과 같다. 따라서 KORMARC의 기술규칙으로 사용되는 KCR4와의 관련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KORMARC에서 본 필드에는 인쇄하거나 필사된 악보의 표현형식을 기술하되, 악보의 표현형식은 동일저작의 다른 판과의 차이점을 판과 같은 형식으로, 예컨대 총보·부보·연습곡악보·총보와 부보·부보모음 등과 같이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²⁵⁾ 그리고 본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008 부호화정보필드(Fixed-Length Data Elements-General Information)의 21번째 자리인 008/20 악보형식(Format of music)을 들 수 있다. 이것은 006 부호화정보필드-부가적특성(Fixed-Length Data Elements-Additional Material Characteristics)의 4번째 자리인 006/03 악보형식과 동일하게 사용된다. 008/20과 006/03 역시 KORMARC과 MARC21에서 거의 동일하게 사용된다. 그리고 008/20 악보형식과 KCR4의 악보종류표시에서 사용된 악보의 종류는 같은 악보의 종류가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고 외래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

4. 발행사항

악보자료의 발행사항은 모든 다른 유형의 자료들과 같이 발행·배포·인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되, 기본적으로 발행에 관련된 발행지·발행처·발행년을 기술하고 배포와 인쇄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술하게 된다. 모든 관련 규칙에서는 발행사항에 대하여 각 규칙의 일반규칙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악보자료에서 발행사항 중 특히 발행년, 즉 발행일자는 악보의 출판 특성상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발행사항 중 '발행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악보자료 발행사항의 기술을 위한 정보원에 대하여는 ISBD(PM)은 표제면·기타 권두지면·

25) 국립중앙도서관. *op. cit.*, p.551.

악보의 제1면·표지 및 판권기 순으로, KCR4는 표제면·기타 머리지면·악보의 제1면·판권기로, 그리고 AACR2R은 주정보원·권두·표지·판권기·기타 권두지면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 모두는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악보출판사들은 거의 최근까지 악보자료에 발행일자를 포함시키지 않아 왔다.²⁶⁾ 오늘날까지도 악보자료에 있어서 발행일자는 드물게 나타난다. 악보자료에 발행일자가 나타나는 경우는 대체로 표제지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발행일자가 표제지에 나타나지 않으면, 대체로 악보자료의 제1면의 맨 밑이나 판권기에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악보자료에는 발행일자 대신 저작권법에 따른 판권일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판권일자는 악보자료에 나타나는 유일한 일자가 되기도 하며,²⁷⁾ 대체로 악보의 제1면 밑부분에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악보자료에 판권일자만이 나타난 경우, 목록자들은 '발행년' 기술시 판권일자를 사용하게 된다. 이때 악보의 제1면은 규정된 정보원이므로 각괄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악보자료는 발행일자나 판권일자 모두를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목록자는 발행의 추정일자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에는 주로 악보의 첫 페이지나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되는 인쇄일자를 발행일자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악보출판사들의 목록이나 국가서지 등을 참고할 수도 있다. 또한 악보출판사목록에 포함되는 발행처번호와 플레이트번호 또한 발행일자 추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작곡일자나 사본의 완료일자는 주로 악보의 끝에 쓰여지므로²⁸⁾ 인쇄일자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규칙별 발행사항을 살펴보면, ISBD(PM)은 1)발행지 및 배포지 2)발행처 및 배포처 3)발행일자 및 배포일자로 구성되며, 선택사항으로 배포처기능표시·인쇄지 또는 제작지·인쇄처 또는 제작자·인쇄일자 또는 제작일자가 있다. 또한 KCR4는 1)발행지, 배포지 2)발행처, 배포처 3)발행년, 배포년 4)제작사항으로 구성되며, 제1장 기술총칙(1.4.0)의 규정에 준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규칙은 악보자료에 관련된 특별한 규정은 전혀 없다.

그리고 AACR2R은 1)발행지, 배포지 2)발행처, 배포처 3)발행일, 배포일 4)인쇄지, 인쇄자, 인쇄년 등으로 구성되며, 선택사항으로 발행처·배포처 등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또한 기본적으로 제1장 일반규칙을 따르며, 미발행된 악보자료에 대하여는 발행지와 발행처를 기술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1821년 이전의 초기 악보자료에 대하여는 제2장 단행본 등의 발행사항을 따른다. 또한 사본악보자료의 발행일자에 대하여는 제4장 메뉴스크립트의 것을 따르도록 한다. 판권일자가 그 악보자료의 제1면에서만 발견되는 경우에는 각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c1971'과 같이 기술한다(5.4F1). 발행처번호와 플레이트번호가 있는 경우는 이들을 주기사항에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5.4D3).

26) Richard P. Smiraglia. *Music Cataloging. op. cit.*, p.21.

27) Robert L. Maxwell. *영미편목규칙 제2판 핸드북. 오동근 역(대구 : 태일사, 2005)*, p.247.

28) Richard P. Smiraglia. *Describing Music Materials. op. cit.*, p.10.

이상의 각 규칙별 발행사항은 모두 원칙적으로 일반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ISBD(PM)과 KCR4는 악보자료의 특성상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발행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반면에 AACR2R은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발행악보·사본악보자료 등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다.

또한 KORMARC과 MARC21에서의 발행사항은 모두 260 발행, 배포, 간사사항(Publication, Distribution, etc.(Imprint))의 \$a 발행지, 배포지 등(Place of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b 발행처, 배포처 등(Name of publisher, distributor, etc.), \$c 발행년, 배포년 등(Date of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e 제작지 또는 인쇄지(Place of manufacture), \$f 제작처 또는 인쇄처(Manufacturer), \$g 제작년 또는 인쇄년(Date of manufacture) 등으로 다른 유형의 자료들과 동일하게 사용되며 해당시 필수사항이다.

5. 형태사항

형태사항은 자료의 형태적인 특징을 기술하는 사항으로, 같은 자료유형표시(GMD) 내에서도 각 자료의 물리적인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기술사항이다. 형태사항은 특히·악보자료를 비롯한 비도서자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항이다. 따라서 악보자료의 형태사항은 악보자료에 속하는 각 자료의 물리적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악보자료에 있어서 형태사항의 기술을 위한 정보원에 대하여 ISBD(PM)과 KCR4는 악보자료자체, AACR2R은 모든 정보원으로 동일하다 할 수 있다.

악보자료의 형태사항은 일반적으로 다른 자료들과 같이 1) 특정자료종별과 자료의 수량 2) 기타 형태사항 3) 크기 및 4) 딸린자료에 대한 기술로 구성된다. 이 중 ‘특정자료종별과 자료의 수량’에서 특정자료종별, 즉 특정자료표시(SMD: Specific Material Designation)는 일반자료유형표시 내의 악보자료의 유형을 확인하는 사항으로 악보자료의 기술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악보자료의 형태사항에 대하여 모든 목록규칙은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특정자료종별표시는 각 악보자료의 특정 자료명을 구체적인 형태로 그 수량과 함께 그 서지기관에 의해 선정된 언어로 기술하게 된다.²⁹⁾ 각 규칙에서 사용된 악보자료의 특정자료종별표시는 <표 1>과 같다. 특정자료종별 기술시 자료의 수량은 아라비아숫자로 기술하는데, KCR4에서의 국내자료는 특정자료종별표시 뒤에, KCR4의 국외자료와 ISBD(PM), AACR2R은 앞세워 기술하게 된다. 그리고 형태사항의 나머지 기술사항, 즉 기타 형태사항·크기·딸린자료는 대체로 일반규칙 및 다른 자료들의 것과 유사하며 주로 일반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9) IFLA. *ISBD(PM):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Printed Music* (München : Saur, 1991), p.46.

〈표 1〉 악보자료의 특정자료종별표시

ISBD(PM)	KCR4	AACR2R
Printed music	악보	Music
score	성악보 vocal score	score
chorus score	합주보	condensed score
close score	클로즈 스코어 close score	close score
condensed score	합창보 chorus score	miniature score
part(s)	콘텐스 스코어 condensed score	piano[violin, etc.]
piano(violin, etc.)	총보 score	conductor part
conductor part	파트보 part	vocal score
study score	피아노 스코어 piano score	piano score
vocal score	미니어추어 스코어 miniature score	chorus score
	피아노[바이올린 등] piano[violin, etc.]	part(Music)
	지휘용파트보 conductor part	

다음으로 각 규칙의 형태사항 중 가장 구별되는 ‘특정자료종별과 자료의 수량’을 중심으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SBD(PM)은 크게 1) 하나의 물리적 단위로 된 단권본 악보자료와 2) 하나 이상의 물리적 단위로 된 악보자료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히 ‘특정자료종별과 자료의 수량’ 기술시 면수매김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정자료종별표시는 「부록C, 추천 특정자료표시 리스트」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표 1〉과 같다. 여기에 수록된 특정자료표시 용어는 영어레코드의 사용을 위해 IAML Project Group에 의해 추천된 것으로, 이 외의 다른 유사한 용어들이 사용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첫째, 단권본 악보자료에 대하여는(5.1.2) 1) 수량의 면수나 장수를 앞세워 〈표 1〉의 특정자료표시를 기술하되, 원괄호 안에 면수나 장수를 기술한다. 2) 면이나 장이 문자로 된 경우는 첫 문자와 마지막 문자를 기재하되, 면이나 장을 나타내는 단어와 약어를 ‘- p-a-k’와 같이 앞세운다. 3) 해당 악보자료의 면이나 장이 상위순차의 일부인 경우는 해당 면이나 장을 나타내는 단어나 약어를 그 숫자 앞에 기술한다. 이때 그 악보자료가 그 자체의 것과 상위순차 일부의 것 모두를 가진 경우는 그 악보자체의 것을 기재하고 상위순차의 것은 주기사항에 기술한다. 4) 해당 악보자료의 면이나 장의 수에 포함되지 않은 도판에 대하여는 ‘기타 형태사항’에 기재하지 않고 특정자료표시의 맨 뒤에 ‘- 1 score(246p., 24 leaves of plates)’와 같이 기재한다. 둘째, 하나 이상의 물리적 단위로 된 악보자료에 대하여는(5.1.3) 1) 악보자료단위의 수를 나타내는 숫자와 〈표 1〉의 특정자료표시를 기재하고, ‘in 4 vols’ 등과 같은 적절한 구를 기재한다. 이때 특정자료표시의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그 단위의 수를 앞세운 “vols.”, “parts”, “folder” 등과 같은 특정자료표시를 기재할 수 있다. 2) 물리적으로 독립된 단위의 수가 본 사항에 기술되지 않은 경우는 이들 각각의 물리적 단위에 대한 면수나 매수매김의 특징을 주기사항에 기술하도록 한다. 3) 여러개의 물리적 단위의 면수나 매수매김이 계속적인 경우는 단위의 수 다음 원괄호에 ‘- 1 score

in 8 vols(894p.)'와 같이 그 내용을 기술한다. 4) 각 단위에 권두지면이나 별도의 면수매김이 있는 경우는 이들을 합산하여 각괄호에 그 총계를 '. - 1 score in 8 vols.([47], 894p.)'와 같이 기술한다. 5) 각 단위의 면수나 매수매김이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는 각각의 면수나 매수매김을 괄호 안에 기술하도록 한다.

KCR4는 특정자료종별표시로 <표 1>의 특정자료표시를 사용하되(5.5.1.1), 이에 해당되지 않는 특별한 종류의 악보는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적절한 용어를 찾기 어려운 경우는 “악보”라는 어귀 다음에 ‘악보 119p.’와 같이 책수 대신 해당 쪽수나 장수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표 1>의 특정자료종별 용어 중 “피아노[바이올린 등]”과 “지휘용파트보”가 있는데 이것은 “피아노[바이올린 등] 지휘용파트보”로 잘못 사용된 것이다. 또한 「부록2, 용어해설」에 이들 용어 중 성악보, 합주보, 총보, 피아노스코어에 대하여만 해설이 있고, 그 중 성악보는 보컬스코어로 되어 있다. 따라서 악보자료의 특정자료종별 용어선정을 비롯한 각 용어에 대한 해설, 외래어표기 등에서 정확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리고 수량의 경우는 해당 악보의 책수를 기술하되, 쪽수나 장수를 원괄호에 묶어 부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5.5.1.2). 국내 악보자료의 경우, 수량은 특정자료종별표시 뒤에 기술되므로 수량을 세는 단위명칭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정은 없이 실례에서 “책”과 “부”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량을 위한 단위명칭에 대한 규정이 요구된다. 이외에 서로 다른 특정자료종별로 구성된 악보이거나 총보와 파트보가 독립되어 있는 경우는 각 특정자료종별 사이에 빈칸 덧셈표 빈칸(+)으로 연결하여 기술한다. 그리고 가제식악보에 대하여는 쪽수매김이 있더라도 쪽수대신 ‘악보 1책(가제식)’ 또는 ‘파트보 2부(가제식1책)’식으로 기술하며, 필사악보인 경우에는 “필사” 또는 “ms.”라는 어귀를 앞세워 ‘필사악보 1책’과 같이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AACR2R에서 특정자료종별표시는 1.5B의 일반지시와 2.5B의 특수지시를 따르면서 <표 1>의 특정자료표시 중 적절한 하나를 제공하되(5.5B1), 음악의 특별한 유형에 대해서는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5.5B1). 이들 특정자료종별에 대한 용어정의는 「부록D, 용어해설」을 참고할 수 있는데, 이들 용어들의 서지적인 사용이 같은 용어들에 대한 구어체의 사용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³⁰⁾ 특정자료종별표시로 <표 1>의 용어 중 어느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v. of music”, “p. of music”, 혹은 “leaves of music”을 사용하되, 자료유형표시가 사용된 경우는 “of music”을 생략할 수 있다. 필사악보인 경우는 KCR4와 같이 “ms.”를 앞세워 기술한다. 그리고 수량의 경우는 출판사에 의해 발행된 총보나 파트보의 수를 기술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유형의 총보로 구성된 악보이거나 총보와 파트보가 독립되었거나 혹은 서로 다른 유형의 총보와 파트보로 구성된 악보는 특정자료종별표시 리스트의 순서 순으로 분리하여 기술한다(5.5B2). 점자악보인 경우는 괄호 안에 적절한 용어, 즉 “braille”, “press braille” 등을 ‘1 score(2v.,braille)’

30) Richard P. Smiraglia, *Describing Music Materials*. op. cit., p.12.

과 같이 기술한다(5.5B3). 이 경우 만약 자료유형표시가 사용되고 그 자료유형표시에 점자자료임이 지시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대형인쇄악보의 경우 역시 “large print”를 ‘1 vocal score(xvii, 378p., large print)’와 같이 기술하되, 자료유형표시가 사용된 경우는 점자자료와 같다.

이상의 각 규칙별 형태사항은 형태사항 중 특히 ‘특정자료종별과 자료의 수량’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대체로 동일하다. 특히 ISBD(PM)은 자료의 수량에 대한 면수 및 장수매김을 보다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ISBD(PM)은 단권본 악보자료와 하나 이상의 물리적 단위로 된 악보 자료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KCR4는 가제식악보와 필사악보자료를 취급한 반면에, AACR2R은 필사악보, 점자악보 및 대형인쇄악보자료를 다루고 있다.

또한 KORMARC과 MARC21에서 형태사항은 표시기호 300 형태사항(Physical Description)의 \$a특정자료종별과 수량(Extent), \$b기타 물리적특성(Other physical details), \$c크기(Dimension), \$e팔립자료(Accompanying material) 등으로 동일하게 사용되며 필수필드이다.

6. 주기사항

주기사항은 기술부 서지기술사항들의 공식적인 기술에 대한 부연설명과 이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항이다. 따라서 악보자료의 주기사항은 악보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보완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악보자료에 있어서 주기사항의 기술을 위한 정보원은 모든 규칙에서 ‘모든 정보원’으로 동일하다.

모든 규칙은 악보자료의 특성을 반영한 주기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원칙적으로 각 규칙에 따른 일반규칙에 준하고 있다. 주기사항에 대하여 ISBD(PM)은 12개, KCR4는 25개, AACR2R은 21개의 주기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주기요소들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나, 어떤 주기들은 해당 악보자료의 본질적인 중요성과 특정한 도서관 이용자들의 필요성에 따라³¹⁾ 목록자의 재량으로 기술하게 된다. 이들 주기의 기술순서에 대하여는 ISBD(PM)은 선택사항으로, KCR4는 그 주기사항에 기재된 순서대로(5.7.3), AACR2R은 일반적인 순서에 따르되 주기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고려되는 것이 있는 경우는 맨 처음에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5.7B). 각 규칙의 주기사항 중 서지기술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요소로 악보자료의 특성상 중요한 사항을 KCR4의 용어로 살펴보면, 대체로 “악곡형식과 연주수단에 관한 주기”, “기보법주기”, “연주시간주기” 및 “표준번호 이외의 번호에 관한 주기” 등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ISBD(PM)에는 “제본과 입수주기”가 있다.

또한 KORMARC과 MARC21에 있어서 주기사항은 모두 5XX필드에 기술하며 모든 유형의 자료들을 위한 필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49개의 주기필드를 가지고 있으며, 계속 새로

31) Robert L. Maxwell. 영미편목규칙 제2판 핸드북. *op. cit.*, p.149.

은 필드들이 추가될 수 있다. 이들 모든 필드가 악보자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목록규칙들의 주기요소와 동일하지도 않다.

“악곡형식과 연주수단에 관한 주기”는 해당 악보자료의 형식과 연주수단이 정형적인 기술사항에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간략한 용어로 주기하는 것이다. 모든 규칙에서 이 주기는 첫 번째 주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ISBD(PM)은 첫 번째 주기인 “표제 및 책임표시사항에 관한 주기” 내에서 첫 번째로 규정하고 있다. “기보법주기”는 만약 그 악보자료의 기보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보법이 아닌 경우 그 사용된 기보법을 주기하는 것으로 모든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연주시간주기”는 해당 악보자료에 그 연주시간이 수록된 경우 그 시간을 주기하는 것이다. 본 주기에 대하여는 ISBD(PM)과 AACR2R이 규정하고 있는데, AACR2R은 “연주시간과 물리적기술주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악보자료는 녹음자료와 달리 형태사항에서 연주시간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또한 ISBD(PM)의 “제본과 입수주기”는 총보와 파트보가 함께 출판되거나 여러 파트보가 함께 출판되는 경우 제본이 요구되는 악보의 특성을 반영한 주기라 생각된다. 이상의 주기들에 대하여 KORMARC과 MARC21의 5XX에는 관련 필드가 없다. 따라서 이들 주기를 MARC에 입력할 경우는 500 일반주기(General note)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

KCR4의 “표준번호 이외의 번호에 관한 주기”에 대하여 AACR2R은 “발행처번호와 플레이트번호주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KCR4는 표준번호(ISBN이나 ISSN) 이외의 번호(발행자번호 혹은 플레이트번호 등)가 악보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도입어, 즉 ‘발행자번호’, ‘Publisher’s no.’, ‘플레이트번호’, ‘Pl. no.’를 앞세워 해당 번호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5.7.3.19). AACR2R 역시 그 악보자료에 나타난 발행처번호와 플레이트번호를 기술하되 적절한 용어, 즉 ‘Publisher’s no.’나 ‘Pl. no.’를 앞세워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5.7B19). ISBD(PM)은 주기사항이 아닌 “표준번호 및 입수조건사항”에 발행처번호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악보자료 출판상 나타나는 발행처번호와 플레이트번호는 대체로 발행일자가 없는 악보자료에서 발행일자의 추정에 실마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악보의 서지들에서 식별수단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중 발행처번호는 악보자료를 확인하고 주문과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된 음악출판사들에 의해 주어지는 번호로, 출판사이름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개 표제지에 나타나게 된다.³²⁾ 플레이트번호는 한 版이 인쇄되었던 도판을 확인하는 것으로 원 도판에 주어졌던 번호이며, 숫자·문자 및 기호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플레이트번호 역시 출판사의 이름이 포함되기로 하며 대개 악보의 각 모든 면의 하단에 나타나게 된다.³³⁾

KORMARC과 MARC21에 있어서 발행처번호와 플레이트번호는 표시기호 028 녹음, 녹화, 음

32) IFLA. *ISBD(PM):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Printed Music* (München : Saur, 1991), p.11.

33) *Ibid.*, p.10.

약관련 발행처번호(Publisher Number)의 제1지시기호(발행처 부여번호의 유형) “2”(플레이트 번호)와 “3”(기타 음악자료번호)에서 \$a 발행처번호(Publisher number), \$b 발행처번호의 정보원(Source) 등으로 해당시 필수이다. 이 경우, 제1지시기호의 “3”에는 발행처번호를, \$b에는 출처(대개는 발행처의 이름)를 기재한다. 또한 제2지시기호의 지시에 따라 표출어가 ‘플레이트번호:’와 ‘기타 음악자료번호:’와 같이 자동생성된다.

7. 기타

이상으로 언급한 기술사항 외에 나머지 사항, 즉 판사항, 총서사항 및 표준번호·입수조건사항에 대하여 악보자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판사항과 총서사항에 대하여 모든 규칙은 기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로 각 규칙에 따른 일반규칙에 준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악보자료에서 발견되는 판차와 총서는 대체로 다른 유형의 자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중 판사항 기술시 유의할 점은 악보의 표제, 책임사항, 자료특성사항 등에 편곡이나 음악형식을 나타내기 위한 edition이 빈번하게 사용되므로 이들과 판표시를 구별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또한 총서사항 기술시는 총서사항과 악보자료의 발행처번호 및 플레이트번호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³⁴⁾

표준번호·입수조건사항 역시 모든 규칙의 기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각 규칙에 따른 일반규칙에 준한다. ISBD(PM)은 1) 표준번호(또는 별도번호)와 2) 입수조건과 가격으로 구성되며, KCR4와 AACR2R과는 달리 본 사항에 ISBN과 다른 표준번호 이외의 발행처번호와 플레이트번호를 KCR4와 AACR2R과 같이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번호를 지닌 경우는 그 악보자료를 명확하게 식별하는 번호를 먼저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KCR4는 다른 자료유형들과 같이 1) 표준번호 2) 등록표제 3) 입수조건표시로 구성되며, 제1장 기술총칙(1.8.0)의 규정에 준한다. AACR2R은 1) 표준번호 2) 등록표제 3) 입수조건 4) 한정어로 구성되며, 목록자에 의해 ISBN이나 ISSN 이외의 다른 번호는 주기에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5.8B2).

그러나 악보자료를 위한 국제표준번호로서 국제표준악보번호(ISMN: International Standard Music Number)가 사용되고 있다. 이 번호는 판매·임대·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저작권 목적을 위해 악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번호로,³⁵⁾ International ISMN Agency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ISMN은 “M”문자 다음에 출판사 식별 및 해당 악보를 나타내는 8자리 숫자와 1자리의 체크값으로 구성되며, ISBN·ISSN과 같이 ISMN을 맨 앞에 붙이게 된다. KORMARC과 MARC21에는 모두 표시기호 020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34) Richard P. Smiraglia. *Describing Music Materials*, op. cit., p.15.

35) 김정현. “ISO/TC 46과 국제표준번호제도의 발전동향.” 정보관리연구, 제35권, 제3호(2004), p.60.

Book Number)와 022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이외에 024 기타 표준부호(Other Standard Identifier)가 있다. 024 필드에서 국제표준악보번호는 제1지 시기호의 “2”(국제표준악보번호: ISMN)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각각의 식별기호에 의해 자동생성된다. 그리고 데이터입력시에는 붙임표나 빈칸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IV. 요약 및 결론

이상의 악보자료 목록의 기술사항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 사항에 따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악보자료 출판의 특성과 상업적인 전통에 따라 악보자료의 목록기술을 위한 주정보원의 선정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모든 규칙은 대체로 동일한 정보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ISBD(PM)은 표제면, 대체표제면(표지·악보의 제1면·판권기) 순으로, KCR4는 표제면, 판권기·표지·이표제면·악보의 제1면, 기타 머리지면이나 용기, 악보 이외의 정보원 순으로, AACR2R은 표제면·대체표제면, 권두·표지·판권기·다른 머리지면·기타 정보원 순이다. 이 중 KCR4는 필사된 악보도 기술대상으로 삼고 있어 선장본으로 제작된 국악보에 대해 필요한 경우 기술사항별 정보원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AACR2R만이 악보출판상의 전통에 따른 리스트표제면을 정보원으로 다루고 있다.

둘째, 자료유형표시는 악보자료의 물리적인 형태를 식별하는 것으로, ISBD(PM)과 AACR2R은 선택사항으로 KCR4는 기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ISBD(PM)은 “printed music”이나 이에 상응하는 언어와 문자로, AACR2R은 “music”, KCR4는 “악보”와 “music”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점자악보자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ISBD(PM)은 자료유형표시에, AACR2R은 형태사항에서 ‘특정자료종별과 자료의 수량’ 다음에, KCR4는 해당 기술사항에 따라 제12장 점자자료의 규칙을 동시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KORMARC과 MARC 21에서는 표시기호 245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의 \$h 자료유형표시로 동일하게 사용된다. 이 외에 리더의 ‘06 레코드유형’과 007 형태기술필드의 ‘00 자료범주표시’에서도 자료유형이 동일하게 사용된다.

셋째, 악보의 종류에 관한 사항은 자료특성사항의 하나로 악보의 특수한 형식이나 물리적인 표현을 악보자료에 나타난대로 기술하는 것으로, ISBD(PM)과 KCR4는 기술사항으로 AACR2R은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사항의 명칭에 대하여 KCR4와 달리 ISBD(PM)은 악보특성사항으로 AACR2R은 음악적표현표시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의미는 모두 동일하게 사용된다. 또한 KORMARC과 MARC 21에서는 표시기호 245 악보의 표현형식의 \$a 악보의 표현형식으로 동일하다. 이 외에 008/20(006/03) 악보형식에서도 악보의 종류가 언급된다.

넷째, 악보자료의 발행사항은 원칙적으로 다른 유형의 자료들과 같으며, 모든 규칙 역시 각 규칙에 따른 일반규칙의 발행사항에 준한다. 그러나 악보출판의 특성상 발행사항 중 발행년, 즉 발행일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악보자료에는 발행일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판권일자만 있는 경우 및 추정 일자를 정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ISBD(PM)과 KCR4는 '발행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AACR2R만이 좀 더 상세한 규정과 함께 미발행악보와 사본악보 등을 취급하고 있다. 또한 KORMARC과 MARC 21에서는 다른 유형의 자료들과 같이 260 발행·배포·간사사항에서 동일하게 사용된다.

다섯째, 악보자료의 형태사항 역시 원칙적으로 다른 유형의 자료들과 같이 각 규칙의 일반규칙에 따른 형태사항에 준하나, 특히 '특정자료종별과 자료의 수량'에서 악보의 특성을 반영한 특정자료종별표시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ISBD(PM)은 단권본 악보자료와 하나 이상의 물리적 단위로 된 악보자료를 구분하여 규정하되, 특히 자료의 수량에 대한 면수 및 장수매김을 보다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KCR4는 가제식악보와 필사악보자료를, AACR2R은 필사악보·점자악보 및 대형인쇄악보자료를 다루고 있다. 또한 KORMARC과 MARC 21에서는 다른 유형의 자료들과 같이 표시기호 300 형태사항에서 동일하게 사용된다.

여섯째, 주기사항에 대해 모든 규칙은 악보자료의 특성을 반영한 주기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원칙적으로 각 규칙에 따른 일반규칙에 준한다. 주기의 수에서는 각 규칙이 다르나 대체로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다. 각 규칙의 주기요소 중 악보의 특성상 중요한 사항으로는 '악곡형식과 연주수단에 관한 주기', '기보법주기', '연주시간주기', '표준번호 이외의 번호에 관한 주기' 및 '제본과 입수주기'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KORMARC과 MARC 21에서 '표준번호 이외의 번호에 관한 주기'에 대해서는 028 녹음·녹화·음악관련 발행처번호의 제1지시기호 "2"와 "3"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주기들에 대해서는 관련 필드가 없다. 따라서 이들 주기를 MARC으로 입력할 경우는 500 일반주기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이상의 기술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판사항과 총서사항은 악보자료 역시 다른 자료유형들에서의 것들과 유사하게 나타나므로 모든 규칙은 각 규칙의 일반규칙에 준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표준번호·입수조건사항은 모든 규칙이 대체로 유사하나, ISBD(PM)은 KCR4와 AACR2R과 달리 발행처번호와 플레이트번호를 본 사항에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날 악보자료에 대한 국제표준번호로서 국제표준악보번호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규칙에서는 본 표준번호에 대한 언급이 없다. 반면에 KORMARC과 MARC 21에서는 표시기호 024 기타 표준번호의 제1지시기호 "2"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상의 악보자료에 관한 목록의 기술사항 분석결과를 토대로 KCR4를 중심으로 한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의 정보원 중 '용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악보자료에서의 용기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둘째, 악보의 종류에 관한 사항 중 악보

종류표시가 KORMARC의 것과 다르게 표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래어의 우리말 표현도 동일하지 않다. 또한 본 사항의 명칭과 KORMARC의 필드명칭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통일성이 요구된다. 셋째, 발행사항 중 발행년, 즉 발행일자는 악보자료의 출판특성상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일반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악보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발행년에 대한 규정이 요구된다. 넷째, 형태사항 중 특정자료종별표시에 있어서 용어의 선정, 용어해설, 외래어표기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내 악보자료의 경우 수량을 세는 단위명칭이 요구된다. 다섯째, 주기사항 중 '표준번호 이외의 번호에 관한 주기'에 있어서 내용은 발행자번호 및 플레이트번호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악보자료에 대한 국제표준악보번호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악보의 특성상 AACR2R과 같이 '발행처번호와 플레이트번호주기'로 규정하고, 본 주기는 다음의 표준번호·입수조건사항에서 취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표준번호·입수조건사항에서 국제표준악보번호가 제외되어 있다. KORMARC에서와 같이 이에 대한 규정이 요구된다.

우리의 악보자료 목록규칙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KORMARC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그리고 악보자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한국목록규칙의 악보자료 규칙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악보자료 목록의 기술 외에 표목 및 통일서명에 관한 후속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통합서지용,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6.
- 김정현. "ISO/TC 46과 국제표준번호제도의 발전동향." 정보관리연구, 제35권, 제3호(2004), pp.51-74.
- 박수정. 국악녹음자료의 목록기입에 관한 연구: 영미목록규칙 제2판에 준거하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85.
- 박찬훈. 비도서자료 편목규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9.
- 이민정. 악보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0.
- 이지원. 음악주제전문사서의 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6.
- 정유진. 음악자료의 목록정보 확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3.
- 정재영, 남태우. "KCR 4판 초안 제5장 '악보'에 대한 분석."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9권 (2002), pp.141-146.

한경신 “녹음자료의 목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1호(2001. 3), pp.125-150.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편. 한국목록규칙, 제4판.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3.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2nd ed., 2002 Revision, 2004 Update. Chicago : ALA, 2004.

Buth, Olga. “Scores and Recordings.” *Library Trends*, Vol. 23. no. 3(Jan, 1975), pp.427-450.
Duckles, Vincent. “Music Literature, Music, and Sound Recordings.” *Library Trends*, Vol. 15, No.3(1967. 1), pp.494-521.

Hartsock, Ralph. *Notes for Music Catalogers : examples illustrating AACR2 in the online bibliographic record*. Lake Crystal, Minnesota : Soldier Creek, 1994.

IFLA. *ISBD(PM) :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Printed Music*. München : Saur, 1991.

Library of Congress. *MARC21 Concise Format for Bibliographic Data: 2005 Concise Edition* <<http://www.loc.gov/marc/bibliographic/ecbdhome.html>> [cited 2007. 2. 15]

Maxwell, Robert L. *Maxwell's Handbook for AACR2 : Explaining and Illustrating the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through the 2003 update*. 4th ed.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4.

_____. 영미편목규칙 제2판 핸드북. 오동근 역. 대구 : 태일사, 2005.

Ostrove, Geraldine E. “Music Subject Cataloging and Form/Genre Implementation at the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32, No.2(2001), pp.91-106.

Smiraglia, Richard P.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 the Bibliographic Control of Music Materials in Librarie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5, No.3(1985), pp.1-16.

_____. *Music Cataloging : The Bibliographic Control of Printed and Recorded Music in Libraries*. Englewood, Colorado : Libraries Unlimited, Inc., 1989.

_____. *Describing Music Materials : A Manual for Descriptive Cataloging of Printed and Recorded Music, Music Videos, and Archival Music Collections, For Use with AACR2 and APPM*. 3rd ed. Lake Crystal, Minn. : Soldier Creek, 1997.

Weitz, Jay. *Music Coding and Tagging : MARC21 Content Designation for Scores and Sound Recordings*. 2nd ed. Belle Plaine, Minn. : Soldier Creek, 2001.